

輸送用機械工業의 國產化政策

—特許權取得을 前提로—

黃 圭 輓

〈KIST 交通經濟研究室長〉



① 國產化的 意義와 必要性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國民所得水準의 差異뿐 아니라 產業의 構造나 技術의 차이에서도 區別된다.

2次世界大戰 以後 植民地 統治에서 解放된 많은 新生國家들이 當면한 課題는 政治的 獨立은 물론 經濟的 自立과 國民所得의 向上에 있었다. 따라서 이를 成就하기 위하여 一次產業에 置重하였던 新생국가들은 雇傭의 吸收力과 生産性이 높은 工業化로 方向을 돌려 부단히 努力하였다.

그러나 이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큰 制約으로 대두된 것이 資本의 不足과 낮은 技術水準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新생국가들은 公업화의 遲延이 不可避했고 失敗도 거듭하였다.

따라서 開發途上國들은 自體의 기술이나 자본의 不足을 극복하기 위하여 從前의 宗主國 혹은 先進國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移植 導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生産財의 輸入은 물론 製品 生産을 위하여 中間財나 部品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時點에서 개발도상국의 實利를 위해 問題가 되는 것이 國產化率의 程度가 된다.

一般的으로 國產化율은 最終製品의 價値에 대해 國內에서 投入된 附加價値의 몫으로 表現한다.

公업화의 初期段階에서 흔히 取해진 組立工業은 底廉한 勞動을 투입함으로써 國產化率은 大端히 낮았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組立工業에서 벗어나 自體生産에 옮겨 갈수록 國內에서 투입되는 부가가치는 높아지고 또 關聯産業의 波

及 效果 또한 커지므로 經濟發展에 기여하는 바는 더 擴大되는 것이다. 이런 理由에서 개발도상국에서 國產化政策은 強調되고 또 施策의 큰 比重을 차지하였다. 더우기 最終製品이 輸出되는 경우에는 外貨稼得率과 國產化율은 比例하기 때문에 더욱더 國產化정책을 강조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중에서 급속한 經濟成長을 성취한 例로 우리나라를 흔히 손꼽고 있는데 그 成功의 底邊에는 國產化정책을 들 수 있으며 이를 比較的 效果的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은 可能하였다고 볼수 있다.

② 輸送用 機械工業의 現況

輸送用 機械는 移動하는 空間의 特性에 따라 多樣하게 발전하였다. 大氣空間을 이동하는 航空機를 비롯하여 陸上과 水上을 이동하는 多種의 輸送用 機械가 文明의 利器로서 우리 日常生活과 밀접히 連結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輸送用 機械工業은 날로 그 기술이 變화 發達하여 綜合 機械工業으로서 技術革新에 先導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송용 기계공업은 다른 공업에 比해 大規模 産業을 前提로하고 많은 關聯工業을 所要로 하기 때문에 한 國家工業技術水準의 尺度가 되며 前述한 産業의 波及效果面에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部門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重化學工業의 育成을 指向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重視되는 工業分野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송용기계공업의 主軸은 自動車工業 및 造船工業으로 構成되어 있고 鐵道車輛 및 小型輸送機械工業도 相當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송용기계의 품목은 船舶用 디젤機關, 버스, 乘用車, 貨物自動車, 貨物船, 自動車피스틴, 自轉車, 모터사이클, 鐵道貨車등 10個품目이다. 한편 이들 수송용기계공업의 最近 5年間 生産指數를 製造業과 비교해보면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1970年을 100으로 볼 때 1975년에는 283.6으로 성장한데 비하여 수송용 기계공업은 616.5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成長産業임을 立證해 주고 있다. 質的인 면에서 보더라도 수송용 기계공업의 주축이 되는 자동차공업의 경우 이젠 特殊車輛을 除外하고는 完全히 國산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다른 개발도상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도 國內需要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수준에 이르고 있다.

③ 輸送用 機械工業의 將來

우리나라의 수송용 기계공업이 앞으로 解決하여야 할 課題는 크게 세가지 觀點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輸送用 機械製品을 좀더 開發하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의 현재 여건으로 보아 航空交通手段보다는 철도 혹은 선박의 多樣한 製品을 개발하는 方向이 合理的이라 보여진다.

둘째로는 生産規模의 擴張問題이다. 어떤 生産單位에서도 適正한 規模를 維持하는 것은 緊要하다. 왜냐하면 貿易을 통한 國際市場과의 連結은 生産규모를 가장 生産費가 적게 所要되는 水準으로 接近시킬 必要가 있고, 이렇게 하므로서 製品의 市場性이 保障되기 때문이다. 더우기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重化學工業製品일 때에는 生産단위의 규모는 더 커야 生産비가 저렴하게 들 수 있으며 특히 수송용 기계공업은 大規模의 設備投資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의 규모를 보면 1976년 현재 3個 自動車生産業體의 生産能力은 年間 約 15萬臺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자동차생산의 經濟性이 유지되는 규모라고 주장되는 年産 30萬臺에 비하여 小規模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生産單價를 높이는 큰 要因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小規模生産能力조차도 국내수요가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輸送用 機械工業界가 當面한 課題는 國內外市場을 더 넓혀 수요의 增大를 포함과 아울러 國際的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生産규모를 확보하는 노력이 傾注되어야 하겠다.

셋째의 과제는 聯關技術의 조속한 育成 및 生産體制의 具備이다. 자동차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품의 品質이 保障되지 않고 있어 生産費 高價의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輕工業 爲主에서 重化學공업을 指向하고 있는 우리나라 經濟開發計劃에서도 수송용 기계공업은 集中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技術支援은 가장 緊要한 要素의 하나로서 指摘할 수 있다.

④ 國產化政策의 方向

工業製品의 國산화는 國民所得, 雇傭 및 聯關部門의 파급효과에서 有利할 뿐만 아니고 자체의 기술개발을 促進하는 役割도 한다. 나아가서 國民의 自負心은 물론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와 根據에서 公營제품의 國산화정책의 重要性은 自明해진다.

그러나 國산화정책을 施行함에 있어서는 많은 隘路가 隨伴되는 것도 事實이다. 그리고 企業의 觀點에서 볼 때 國산화의 速度나 시행이 摩擦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國산화를 좀더 效果的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大규모의 生産을 前提로 하는 公營제품은 國內企業間의 系列化 및 協業이 불가피하며 國際間의 協業도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獨自적으로 規模問題를 解決하는 한 방법으로서 海外市場을 開拓하고 이를 基盤으로 하여 規模經濟를 달성하는 것도 考慮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경제를 달성하기까지는 國家的 次元에서 充分한 補助가 필요하며 競爭國에 비해 저렴한 要素價格을 効果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협업을 통한 規模經濟의 달성은 短期的으로 國산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나 長期的으로는 國산화에 接近하는 길이 되므로 政策의 考慮가 필요한 것이다.

처분이 特許法 51條 2—3項에 의거하여 또는 審査基準에 의하여 특허공보나 정정공보에 공시되었을 때는 먼저 行政上의 客觀的 劃一性의 要求가 특히 強하므로 公示制度의 趣旨에 비추어 現實的으로 탐지 여부에 不拘하고 知悉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나) 처분의 取消訴訟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限하여 提起할 수가 있다. 例를 들어 本訴에 따라 본건 출원공고 및 본건공보의 정정이 취소되어도 이로써 特許權이 消滅하지는 않으므로 X, Y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허법 123條에 의한 爭訟에 依存해야 한다.

6. 判決要旨

① X는 원래 출원공고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부터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違法이므로 本件 公報의 정정은 그것이 공시되었다 해도 그에 따라 X가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效果를 안겨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물론 출원공고의 내용정정은 許容되는 補正에 의거한 경우 이외는 이를 해낼 수 있는 규정을 특허법속에서 찾아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출원공고의 내용은 이를 정정할 수는 없으며 정정할 경우는 반드시 前出願公告를 撤回하고 새출원공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有效한 보정에 따른 정정은 아니며 출원공고를 할 자의 過誤로 잘못된 출원공고가 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출원공고를 정정해도 關係人의 權利義務에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도록 정정까지 일일이 전의 출원공고를 해야 한다면 그 일 자체에 따라 오히려 관계인의 권리가 變動을 이르게 妥當性이 缺如된다.

출원공고의 내용정정은 特許法속에서 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야 하게 된다.

② 本件處分과 같이 공고라는 形式으로 되는 처분은 그

공고가 適法으로 되었을 경우는 공고하는 제도의 성질상 그 공고가 된것을 實際로 알고 있었으나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 공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된다.

그래서 X의 신청으로는 이 기간 경과후에 한 것이므로 不適法이다.

7. 解 說

本件 判決要旨는 특허법속에 明文規定이 없을 경우에도 출원인을 위하여 출원공고의 내용을 정정하는 行政處分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공고의 내용이 잘못될 수는 없을 것이며 있다손 치더라도 認定해야 출원인의 이익이 保護된다.

또한 공고라는 공시제도도 보아 공보의 存在與否를 알진 모르진 不問에 부치는 것도 不得已할 것이다. 그러므로 判旨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흔히 볼 수 있는 事件은 아니므로 注目할만한 것이다.

— 11면에서 계속—

그리고 국산화정책은 국내수요가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로 區分하여 결정하여야 하겠다.

국내수요가 供給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目標를 設定하는 것은 물론 系列化部品の 국산화도 아울러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산화와 관련하여 看過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國內技術의 蓄積 및 개발이다. 공업화와 관련하여 黨面하게 되는 큰 문제의 하나는 技術不足현상인데 기술은 一般製品과는 달리 短時日에 이룩될 수도 없거니와 기술의 移植 혹은 去來는 多樣하고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必要不可缺한 부분만 나누어서 도입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自體가 기술을 잘 把握 選別할 수 있는 基本能力이 있어야 하며 비록 기술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各會社는 技術開發部署와 工業所有權管理機構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자체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체의 技術開發能力은 국산화를 촉진하고 성취하는 根源이 된다는 것을 認識하여 이에 대한 政策의 支援이 필요하다 하겠다.